

[대표이사횡령] 학원사업체 법인에 대해 채권자 대표이사, 정상 회계처리 없이 수강료 수입 등 임의사용 행위 - 불법영득의사 인정, 업무상 횡령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7노1513 판결



사안의 개요

- (1) 학원 사업체 - 법인 vs 운영자 대표이사 - 개인
- (2) 대표이사의 학원 법인에 대한 채권 존재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수강료 수입 등을 정상 회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 사용
- (3) 대표이사가 개인 사용한 금액은 학원 법인에 대한 채권액보다 적고, 학원 법인의 채무 변제이므로 불법영득의사 없다고 주장함
- (4) 쟁점 - 업무상 횡령 성립여부

불법영득의사 판단기준 법리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의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금전이 회사장부상 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대표이사가 회사소유의 자금인 위 금전을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936 판결 참조),

일단 위 대표이사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 불법영득의사 인정, 업무상횡령죄 성립 인정

① 학부모들이 현금이나 수표로 수강료를 납부할 경우, 통상적으로 경리 담당 직원인 H(학원의 수강료 납부내역 정리 및 입금 업무를 모두 처리했다)가 당일 또는 익일에 은행에 가서 학원의 계좌에 입금하고 학원 웹 프로그램(학원생에 대한 정보, 출결사항, 학원비 납부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다)과 학원비 수납내역 엑셀 프로그램에 수납 사실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수납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수강료의 경우 피고인은 H로 하여금 수강료로 납부된 현금 또는 수표를 자신에게 가져오게 한 후 위 각 프로그램에 수납 사실을 입력하지 않게 하고 나아가 해당 학원생을 퇴교 처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강료 수납 사실을 은폐하였다. 이는 학원 법인의 대

표이사가 정당하게 자신의 가수금채권을 변제받는 형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학원의 재무상대표나 계정별원장 등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강료를 수령하고 소비한 것에 대해 가수금의 변제나 가지급금의 상계 등으로 기재되거나 회계 처리된 적이 없다.

③ 피고인이 위 수강료를 수령한 후 학원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해 전혀 소명한 바가 없다)에 비추어 보면, 위 수강료는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에 지출된 것으로 추론된다.

④ 피고인이 수강료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정당한 가수금채권의 변제로 볼 수 없는 이상,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학원 법인의 계좌내역상 '피고인이 학원 법인에 입금한 금액'이 '학원 법인이 피고인에게 입금한 금액'보다 더 많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7노1513 판결

조사자문, 형사/민사소송, 손해배상, 화해계약, 합의, 공탁 등 One-Stop 대응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